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2020.03.01. 개정

제53조(학위지도교수)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020.03.01. 개정

제5장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

제20조(학위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2020.03.01. 개정

제14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제69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학위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72조(학위지도교수의 변경)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변경사유”라 한다)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3조(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2]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논문지도교수	1. 인문사회계열 : 최근 3년 기준 년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100점 이상인 자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최근 3년 기준 년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300점 이상인 자(임상교수제외) 3. 예체능계열.시.소설 등 창작분야 : 최근 3년 기준 년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100점 이상인 자 ● 본 자격기준의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을 적용함